

## 특례(외국국적동포) 고용가능확인서( [ ]발급 [ ]변경)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주된 사업장 (사업주)	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사업장명	④대표자

사업장 개요	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		⑤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		
	⑥사업장명		⑦대표자		
	소재지 □□□-□□□		연락처	전화번호	
				휴대전화번호	
				팩스	
				전자우편	
⑧업종		사업내용			
상시 근로자 수		내국인근로자 / 외국인근로자			
총 명		명 / 명			
가입 보험	[ ]고용	[ ]산재	[ ]건강	[ ]국민	

신청 내용 (최초 신청시)	내국인 구인노력	구인 인원	명			
		구인 직종	직종( )	직무내용( ) ※구체적으로 적을 것		
		구인 기간	( )일 ( ) ~ ( )			
		고용센터 알선자 면접이력	면접 일시			
	면접 대상자					
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 여부		채용하지 않은 사유				
		[ ]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[ ]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 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[ ]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[ ]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[ ]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				

구인 사항	모집 인원	명	국적	1) )
	학력	최저: 최고:	자격면허	1)
	전공			2)
	연령	만 세 ~ 세	한국어 능력	[ ]상 [ ]중 [ ]하 [ ]관계없음
	기타 (경력 등)			

###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

근로조건	근로시간	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	시 분 ~ 시 분 (8시간 기준) *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: 시간, 교대제( [ ]2조2교대, [ ]3조3교대, [ ]4조3교대, [ ]기타)			
		농업·축산업	시 분 ~ 시 분, 월 ( )시간 * 농번기 ( 월 일 ~ 월 일 ): 시 분 ~ 시 분, 월 ( )시간			
		어업	월 ( )시간			
	근로계약기간	( )개월				
	휴일 및 휴게시간	휴일: [ ]일요일 [ ]공휴일([ ]유급 [ ]무급) [ ]매주 토요일 [ ]격주 토요일 [ ]기타( ) * 농업·축산업 농번기( 월 일 ~ 월 일): [ ]일요일 [ ]공휴일([ ]유급 [ ]무급) [ ]매주 토요일 [ ]격주 토요일 [ ]기타( ) 휴게시간: 1일 ( 분) * 농업·축산업: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( )시간 ( )분을 휴게시간으로 함				
	임금 및 지급방법	기본급	월(시간, 일, 주)급: ( )원 * 농업·축산업 농번기( 월 일 ~ 월 일): 원			
		고정적 수당	( 수당: 원), ( 수당: 원)	상여금	( 원)	
		수습기간 중 임금	월(시간, 일, 주)급: ( )원, (수습기간: [ ]1개월, [ ]2개월, [ ]3개월)			
		월 통상임금	( )만원(시간외 수당 등 제외) *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			
		지급방법	[ ]직접 지불, [ ]통장 입금	지급일	매월	일
숙식제공 여부	숙 박		식 사			
	숙박시설 제공 여부: [ ]제공, [ ]미제공 * 제공 시, 숙박시설 유형([ ]아파트, [ ]단독주택, [ ]연립·다세대주택, [ ]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, [ ]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)		식사 제공 여부: 제공([ ]조식, [ ]중식, [ ]석식), [ ]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: [ ]부담 (부담금액: 원), [ ]미부담 (부담금액: 원), [ ]미부담			
기타						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)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첨부 서류	1.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.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(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3.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,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·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 없 음
-------	--	----------------

#### 유의사항

-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# 작성방법

- ①~④란은 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 특히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개요에서 ⑤란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, ⑥란의 사업장명 및 ⑦란의 대표자는 세대주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.
- ⑧란의 업종은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적되,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적어야 하고 업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적습니다.